

□ 국문(비공식 번역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일본 후생노동성,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간 보건 협력을 위한 협력 각서

보건 발전 증진, 역내 보건 안보 보장과 보건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각 당사자 간의 보건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일본 후생노동성,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협력 각서에 합의하였다:

제 1 항

협력 분야

법, 규칙, 규정 및 국가 정책에 따라 각 당사자는 다음 분야에 대한 기술적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 팬데믹 인플루엔자와 공통 관심 신종/재출현 감염병 공동 대응에 관한 협력 각서와 3국 보건 장관이 채택한 대유행을 초래하거나 높은 중요성을 지닐 잠재적 공통 관심 감염병 대비 및 대응에 관한 3국 공동행동계획에 기반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팬데믹 등의 감염병의 예방 및 통제;
- 공중보건 위협 및 자연재해로 인한 보건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보건 비상상태 대응 매커니즘과 역량;
- 비전염성질환의 예방 및 통제;
- 일차보건의료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 및 보편적 의료보장(UHC) 증진
- 보건 연구;
- 디지털 의료;
- 고령자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및 건강한 노후 증진;

8. 병원 관리;
9. 당사자가 동의한 여타 다른 분야

제2항

협력 형태

당사자는 아래 매커니즘을 통해 본 협력 각서 하에서 어떤 형태/형태들의 협력을 할지 상호 결정한다:

1. 네트워킹을 포함한 정보 및 경험 공유;
2. 합동 조직 컨퍼런스, 포럼 및 워크샵;
3. 보건 전문인력 및 의료인력의 훈련;
4. 의학 전문가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의 상호 방문 및 파견;
5. 합동 연구 프로젝트;
6. 보건 합작 프로젝트의 합동 신청 및 수행;
7. 당사자가 동의한 여타 매커니즘.

제3항

협력 확대

당사자는 협력 범위의 확대를 위해 필요에 따라 다른 아시아 국가를 초청하여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적 역량 강화를 개발하고 향상 시킨다.

제4항

조건

1. 본 협력 각서는 당사자의 인력, 재원 및 자금의 가용 여부의 조건 하에 각

국가의 법과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2. 본 협력 각서의 해석 혹은 시행으로부터 발생한 각 당사자 간/당사자들 간의 그 어떤 분쟁도 각 당사자 간/당사자들 간의 협의와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5항

수정 및 종결

1. 본 협력 각서에 기반한 협력은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5년간 유효하다.

2. 본 협력 각서는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서면으로 협력 종료 의사를 알리는 것으로 어느 때든 협력을 종료할 수 있다.

2023년 12월 3일 베이징에서 영문본으로 3부에 서명한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위생위원회

일본
후생노동성